

# 환경·교통·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(안)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

- 대한석유협회 -

이 내용은 지난 10월 11일 환경부에 제출한 건의 내용을 발췌·요약한 것임<편집자주>

##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정(안) 의견

제 정 (안)	건 의 (안)	건 의 사 유
제4조(평가서의 내용등)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별 작성방법, 기타 평가서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<u>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</u> 고시한다.	③----- ----- ----- <u>통합하여</u> -----	○환경·교통·재해영향평가의 소관부처가 다르긴 하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통합 실시하는 것이므로, 본 고시도 통합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법 통합의 취지를 살림.
제23조(재협의 대상 및 재협의) ①법 제23조 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”라 함은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<u>3년</u> 이내를 말한다.	①----- ----- ----- <u>7년</u> -----	○영향평가는 평가 당시의 주변상황 뿐 만 아니라 평가 당시 계획되어 있는 개발계획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변여건이 단기간 내에 평가내용과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임. ○반면에,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므로 협의 이후 설계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며, 정확한 착수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움 ○따라서 3년 이내에 재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평가의 실익에 비해 사업자의 시간적,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므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과 같이 재협의 대상 기간을 7년으로 함.
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정(안) 의견

제 정 (안)	건의 (안)	건의 사유
<p>② 1..... 다만,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<u>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영향평가를 제외한다.</u></p>	<p>② 1.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</p>	<p>○다른 행위는 없이 단순히 면적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교통, 재해, 인구 등에 대한 영향도 없을 것임. ○환경분야의 영향평가만을 제외하도록 할 경우 본 규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, 이들 분야의 평가도 제외하도록 함.</p>
<p>제8조(평가서등의 보존)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등을 보존하여야 할 기간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후 <u>10년으로 한다.</u></p>	<p>〈삭 제〉</p>	<p>○평가서와의 비교 및 필요시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중에는 사업자가 당연히 평가서를 보존할 것이며, ○그 후에는 현행법상 평가서의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존기간을 설정하는데 실익이 없음. ○따라서, 평가서의 보존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함.</p>
<p>제15조(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) ②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대상 협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<u>소속직원을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②----- ----- <u>경우에는 5년 간 소속 직원을</u> -----.</p>	<p>○ 공사완료후의 이행대상 협의내용은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제정(안)과 같이 규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(수십년간) 계속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. ○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사업완료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관계법령 또는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해 당연히 준수될 것이며, ○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이 존속될 때 까지 협의 내용관리책임자를 계속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관리의 부담만 주는 반면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. ○ 따라서, 지정기한을 5년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으로 함.</p>